

의안번호	제 348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6월 일 (제 311 회)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양희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2년 6월 4일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8
----------	-----

발의연월일 : 2012년 6월 4일

발 의 자 : 김양희, 김영주, 박종성,
유완백, 정지숙, 최병윤,
강현삼

1. 개정이유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절차 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문장순화와 표현의 명확화(안 제3조, 안 제21조, 안 제32조, 안 제34조, 안 제56조, 안 제23조)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마련(제3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나. 관련부서 협의 : 협의함.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소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한다.

안 제3조 중 “안에 있는”을 “에 있는”으로 한다.

안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세계유산의 등재) 도지사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충청북도의 우수한 문화재가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이하“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23조제1항 중 “충청북도 세계유산추진위원회를”을 “충청북도 세계유산추진위원회(이하 “세계유산추진위원회”라 한다)를”로 한다.

안 제30조제1항 중 “문화재자료로서의”를 “문화재자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안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문화재자료의 지정) 오래되지 않은 건조물이라도 도시화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고 향후 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문화재자료로 확대 지정할 수 있다.

안 제34조제3항 중 “도지정문화재나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의 소유자·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정문화재나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의 소유자·관리자”로 한다.

안 제38조의 “(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38조제4항부터 같은 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시·군의 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교부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안 제43조의 “보조하는데”를 “보조하는 데”로 한다.

안 제45조의 “도지정문화재 또는”을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또는”으로 한다.

안 제47조제2항제4호의 “준하는 사항으로써”를 “준하는 사항으로서”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사항”을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안 제49조의 제목을 “건설공사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 시장·군수가 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공사를 인·허가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

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안 제49조제2항 중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를 삭제한다.

안 제56조의 제목 “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를 “도지정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을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유자가”를 “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제1항에 따른”을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서식1호부터 별지 서식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1. 기관명 :

2. 대표자 :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8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지사 [인]

[별지 제3호서식]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

①교부 번호	②교부 일자	③기관명	④지정일	대 표 자			
				⑤성 명	⑥생년월일	⑦수 의 사 면허번호	⑧면허일자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소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충청북도 도내에 있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p> <p>1.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를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설치)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안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3조(설치) ----- -----에 있는 ----- ----- ----- ----- -----.</p>
<p>제4조~제20조 <생략></p>	<p>제4조~제20조 <현행과 같음></p>
<p>제21조(세계유산의 등재) 도지사는 충청북도 안에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세계유산·세계무형문화유산·세계기록유산(이하“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으로 등재 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p>	<p>제21조(세계유산의 등재) 도지사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충청북도의 우수한 문화재가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이하“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제22조 <생략></p>	<p>제22조 <현행과 같음></p>
<p>제23조(세계유산추진위원회 설치) ① 세계유산 등의 등재 또는 선정 신청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세계유산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23조(세계유산추진위원회 설치) ① ----- ----- 충청북도 세계유산추진위원회(이하 “세계유산추진위원회”라 한다)를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30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u>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1. ~ 6. <생략></p> <p>7. <u>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도내에 두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u></p> <p>8. <u>무형문화재의 지정취지와 어긋난 보존관리 행위 또는 원형보존 및 전수 교육이 부적합한 경우</u></p> <p>제32조(문화재자료의 지정) ① <생략></p> <p>② <u>이 경우 도시화 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는 오래되지 않은 건조물이라도 향후 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확대 지정할 수 있다.</u></p> <p>③ ~ ④ <생략></p> <p>제33조 <생략></p>	<p>제30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 <u>문화재자료가</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u></p> <p>8. <삭제></p> <p>제32조(문화재자료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오래되지 않은 건조물이라도 도시화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고 향후 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문화재자료로 확대 지정할 수 있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33조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 ② <생 략></p> <p>③ 제1항에 따라 시·군 등을 지정 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u>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시·군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u></p> <p>④ <u>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u>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 ⑥ <생 략></p>	<p>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의 소유자·관리자와</u> ----- -----.</p> <p>④ <u>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의 소유자·관리자는</u> ----- ----- -----.</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35조~제37조 <생 략></p>	<p>제35조~제37조 <현행과 같음></p>
<p>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는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군수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u>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의 추천</u>을 받아 도지사가 지정한다.</p> <p>1.~3. <생 략></p> <p>②~③ <생 략></p>	<p>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요건 등) ① ----- ----- ----- ----- ----- ----- ----- ----- ----- ----- ----- <u>관리단체의</u> ----- -----.</p> <p>1.~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④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시·군의 장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신 설> <p>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⑥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교부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그 사유서 2.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신 설>

현행	개정안
<p>제43조(전수 교육 조교)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조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 교육을 <u>보조하는데</u>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44조 <생략></p> <p>제45조(행정명령) ① <u>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u>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p> <p>1.~5. <생략></p> <p>제46조 <생략></p> <p>제47조(수리 등) ①~② <생략></p> <p>1.~3. <생략></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u>준하는 사항</u>으로써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수리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u>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u>로 정하는 <u>사항</u></p> <p>제48조 <생략></p>	<p>제43조(전수 교육 조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보조하는 데</u>----- -----.</p> <p>제44조<현행과 같음></p> <p>제45조(행정명령) ① <u>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또는</u> ----- ----- ----- -----.</p> <p>1.~5. <현행과 같음></p> <p>제46조 <현행과 같음></p> <p>제47조(수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 --- <u>준하는 사항</u>로서----- ----- -----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제48조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 제1항제2호로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시장이나 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51조~제55조 <생략></p> <p>제56조(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 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여야 한다.</p> <p>1.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기·예능의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p> <p>2.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의 종목별 성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지원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57조~제66조 <생략></p>	<p>③ ----- ----- -----, ----- 인정하는 때에는 ----- -----.</p> <p>제51조~제55조 <현행과 같음></p> <p>제56조(도지정무형문화재의 기·예능 공개) ①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 ----- -----.</p> <p>1. 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가 -----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57조~제66조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③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조난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치료한 동물치료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천연기념물의 치료와 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치료 경비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連署)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제35조제1항제4호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9.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53조(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의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 ①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이하 "문화재수리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한 자는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변경신고, 폐업신고를 받으면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을 하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

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⑦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문화재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처리 방법) 문화재청장은 지표 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문화재가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화재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4조(설립과 운영) ①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시설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 지원 시설로 평가되어야 한다.

③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교육·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되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

구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

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